- 경기도수원월드컵스포츠센터 -

다목적 체육관 시설 개선공사

[시방서]

2022년 3월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시 방 서

1. 공 사 명 : 경기도수원월드컵스포츠센터 다목적 체육관 시설 개선공사
2. 위　　치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내 월드컵 스포츠센터 2층
3.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경기도수원월드컵스포츠센터 다목적 체육관 시설 개선공사를 행함에 있어 계약서, 설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내용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공사 및 이와 관계되는 업무시행에 있어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하는 것 이외는 본 시방서에 따라야 한다.

4. 공사개요
   1) 다목적 체육관 메이플후로링 보드 시공
   2) 관급자재 : 메이플 후로딩 보드 1,170㎡
   3) 라인마킹 : 농구장 규격 2면, 배드민턴 규격 4면
   4) 그물망휀스 설치 : H3000,D100+D50각파이프

5. 일반사항
   1)공사대상지의 자료를 수집 검토하고 정확한 현장 답사를 통하여 세밀한 답사가 수행되어야 한다.
   2)본 시방서의 설계도면이 정한 공법이나 자재 및 제품 등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행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얻은 뒤에 수행하여야 한다.
   3)자재의 품질확보을 위하여 KS규격품, 표준설계서 규격품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KS표시 규격이 없는 경우 기타 공인된 규격품, 형식승인 등 관련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4)사용자재에 대하여는 사용 설명서, 시험성적서, 공법등 기술 자료를 구비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입고하여야 한다.
   5)각종 제반 여건의 조사. 검토. 적용. 착오 등으로 준공 후 시행과정에서 주요공정의 수정이 불가피한 경우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6)시공비가 증액될 경우에는 계약 금액으로 하여야 하고 감액 시에는 감액 변경 한다.
   7)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가 할 수 있다.**
6. 적용법규 및 기준

1)수급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설계도 및 일반시방서에 기재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시방에 따른다.

2)본 시방서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사항은 관계법규, 관계법령, 건설부 제정 건축 시방서(건축설비공사) 및 기계설비 표준 시방서에 준용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해석 상의 이의가 발생할 시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3)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르거나 누락. 오기.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견해의 차이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작업의 성질상 당연히 수행해야 할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고, 비용은 작업 시공자가 부담한다.

4)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나타난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도록 충분히 검토한 후 모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기능에 관계되는 경미한 누락 또는 오기에 대하여서는 금액 증감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7. 공사시행

1)시공자의 의무

가. 목적물을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고 완성해야 한다.

나.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시공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하며 발주자가 당해 목적물을 최종 인수하기 전까지는 목적물을 보호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다. 목적물이 손상을 받을 경우, 또는 목적물이 제 기준에 맞지 않을 때에는 계약서 또 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목적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라. 작업수행과 관련하여 경기장 주변 시설물과 운영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측 및 예방 하여 과업수행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마. 과업이 완료 되었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가설물 등을 철거, 반출하고, 현장을 청소, 정리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시공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소정 양식의 공정표를(착공계, 현장대리인계, 안전관리계획서등) 공사 착수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감독원의 요구에 따라 시행의 순서, 방법, 주요자재의 반입계획, 주요기계 설비의 반입과 배치 및 사용계획, 안전대책(유해위험방지계획) 및 환경대책 등에 대하여 감독원에게 보고 후 승인을 받은 후 착수하여야 한다.

8.시공관리

1)시공의 일시 중지

가.감독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용역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 기후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목적물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 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수행하지 않거나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 경기장(K리그경기)의 각종 행사와 관련하여 작업 진행이 어렵다고 인정할 때

2) 농구 코트 후로링 시스템 공사

가. P.E필름 (0.1T)을 200mm이상 겹쳐서 펼치고 OPP테이프로 밀봉한다.

나. 장선목(45mm*50mm)을 목재의 뒤틀림 방지를 위하여 받침목 간격(610mm)을 계산한 후 ½톱선작업을 한다.

다. 톱선작업이 끝난 장선목 이면에 방진고무(25T)를 부착한다.

라. 장선목을 도면 치수 305mm간격으로 배열한후 장선목 이음선이 일정하게 나열되지 않도록 교차 배열하여야 한다.

마. 기준장선목에 받침목 프라스틱쐐기(25*45*150)를 정열하고 기준레벨작업을 한 후 기준 장선목의 이탈을 막기 위한 고정작업을 한다.

바. 일정간격으로 정열된 기준 장선목 사이의 장선 레벨작업을 하며 전체 장선 레벨을 체크한다.

사. 장선 수평이 완료된 후 국산 내수합판(12t*1220*2440)을 교차 배열한다.

아. 합판깔기 작업 시 합판사면 5mm여유를 두며, 전측면벽체에서 10mm내외의 여유를 둔다.

자. 합판 위의 단풍나무 후로링(22T*60*1800)에 혀와 홈을 맞댄 후 후로링 못을 사용하여 혀의 사선방향으로 고정작업 한다.

차. 후로링은 현장의 습도와 온도차이로 인한 목재의 수축팽창 및 하자방지를 위하여 5~8쪽마다 익스펜션죠인을 주고 측면벽체와의 유격을 6~10mm 띄워 시공한다.(현장조건에 따른다.)

카. 기성 환기형걸레받이(18T*80*2400)를 설치한다.

타. 상기 모든 공정마다 충분히 협의하여 시공하며 공사완료 시 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9.공사기록

착수로부터 준공시 까지의 작업공정, 진척사항, 시험성적, 공종별사진, 준공사진등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 비치하고, 준공시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시공확인 및 검사

1)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 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2)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1.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1)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사항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2)공사 착수 전에 안전시설을 하여야 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 전기,상하수도 및 통신 등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 기타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원이 지시하는 사항

3)공사 시공 중에는 장비 반입 또는 인접해 있는 기존 구조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현장에는 적절한 장소에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5)작업전 안전사항 준수 교육을 작업자에게 실시 한다 .

- 화재안전준수, 안전장구류 사용, 낙하물 및 개구부 추락등 안전사고 준수 등

12. 안전관리

1)수급자는 본 작업에 기술력과 경험을 가진 자를 현장에 상주시켜 제반 공정관리 및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다하게 하여야 한다.

2)공사장 기본안전수칙(안전장구류 사용, 낙하물 및 개구부 추락 등)

- (로프 고정) 2개 이상의 지점에 견고히 고정 한다.
- (로프 점검) 고정점과 로프의 안전성을 점검 한다.
- (구명줄설치) 별도의 고정점과 연결된 구명줄을 설치한다.
- (개인보호구) 안전대와 구명줄을 연결하고, 안전모를 착용한다.
- (작업진행) 모든 작업은 안전시설 확인 후 작업 한다.

3)수급자는작업역중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만약 사고 발생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4)본 작업 진행 중 의문사항이 발생할 시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상호 의견이 상충 될 경우에는 감독관의 의견에 따른다.

13. 하자보증

1) 수급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한 물품에 대해서 하자보증 기간 동안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2)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경비 기타 손해등 제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보상케 할 수 있다.
3) 작업종료 후 하자보증서를 제출 한다.